

	VISION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송우통신
	생각키움 · 마음올림 · 꿈자람 교육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2021. 3. 22. 교무실: 543-1311 행정실: 542-1584 담당자: 교사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여운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예방 및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정폭력 정의 및 구성원의 범위

-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아동(18세 미만)학대란?

-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 「아동복지법」 제 3조)

●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와 대화시간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 필요 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존중, 역지사지(易地思之), 책임 및 준법의 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니다.
- 다음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신감 결여, 사회적인 활동 기피, 갑작스런 학업성적 저하, 성격 변화, 불면증, 우울증, 식욕상실, 지나친 산만함, 등교거부 또는 잦은 지각, 많은 용돈 요구, 거짓말, 옷이 찢어지고 소지품이 파손됨, 타박상이나 상처, 말이 적어지고 비밀이 많아짐, 잦은 외출, 친구로부터의 전화에 신경을 씀

※ 모든 어린이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이 있다면 신고하여 주세요. 피해학생상담 및 신고접수는 1577-1391, 129, 112, 119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 피해 이렇게 도움 받으세요



※ 무료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2021. 3. 22.

송우초등학교장